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비 및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군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1. 온도 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별표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9.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은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집·운반, 회수·인계 할 수 있다(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은 해체·선별·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 등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온도교환기기 등	1)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1) CRT(Cathode-Ray Tube)형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태양광 패널	1)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일반 전기·전자제품	1) 고온·화기·직사광선·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폐기물의 유출·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이동전화단말기, 통신·사무기기는 80퍼센트 이상,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